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2076

제출연월일 : 2024. 7. 22.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 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 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을 "따른"으로 한다.

제2조(「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 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방법"으로 한다.

제3조(「물관리기본법」의 개정) 물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대통령"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 회(이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4항 중 "관리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전단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물질동등성 인정"을 "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 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품유사성 인정"을 "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 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조(「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 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 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나.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다.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 통위원회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6조(「습지보전법」의 개정)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 온실가 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배출권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운영위원회(이하"배출권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 2.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3.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4.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 5. 제29조에 따른 상쇄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②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배출권 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서 심의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배출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제1호 중 "인증위원회"를 "배출권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개정)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환경정책기 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를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시·도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역위원회"를 각각 "시·도환경정책 위원회"로 한다.

제9조(「자연공원법」의 개정)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4호,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공원 위원회"를 각각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국가자연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제10조의2 중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를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를 "국가자연공원위원회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제3호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각각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본문 중 "제3조"를 "제3조, 제9조, 제10조제3호의2· 제5호, 제10조의2"로 한다.

제3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협의"를 각각 "협의와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10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제2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위 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항평가심의

위원회

3.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6조제2항 중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국가수자원 관리위원회"로 한다.

제5장(제37조 및 제38조)을 삭제한다.

제11조(「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4제3항 중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을 "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로 한다.

제10조의9를 삭제한다.

제12조(「폐기물관리법」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48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각각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 전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로,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관리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
-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평가위원회"를 각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한다.

제48조의2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의 요 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 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권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3조(「물관리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관리기본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단서,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권운영위원회가 한 행위 또는 배출권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자연공원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립공원위원회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 원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자연

공원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시행 당시 종전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5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에 심의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4조제5항 본문,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9조(「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 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6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조 제5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 전단, 제26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 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8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의2제6항 후단 중 "국립공원위원회"를 각각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한다.

②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4. 다른 법령에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으

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58조제4항 중 "자원순환"을 "자원순환·인공조명"으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① ~ ④ (생 략)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	5		
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u>심사위원</u>	<u>「온실가스</u>		
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	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	8		
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			
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			
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u>따른</u>	<u>따른</u>		
<u>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u> 비			
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			
른 개선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u><삭 제></u>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		
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		
<u>능성</u>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u>수용가능성</u>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u>사항</u>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⑤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u>방법, 제4항에 따른 사</u>	<u>방법</u>	
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	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	<u>국무총리</u>
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	
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	
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	
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	<u>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u>
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수 있다. <단서 신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
	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u>으로 한다.</u>
<u><신 설></u>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
	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 23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 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u>③</u>
<u>위촉위원</u>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아 혂 했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 📗 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물질관리법 | 제7조에 따른 화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 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삭 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 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 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 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 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 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 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한다)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등에 관한 사항
-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 <u>8.</u>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

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 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 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 계·민간단체 관계자

-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사람
-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 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 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 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 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사람
-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 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 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 회를 둘 수 있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 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

제 8 조(위해성평가 등) $① \cdot ②$ (현
행과 같음)
③
화학물질안전위원회
<u>4 7 2 2 2 2 1 2 4 </u>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u>화학물질안전</u>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u>화학물질안전</u>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의 안전기준) ①

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⑤ (생 략)
-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ㅈ ~ ③ (생 략)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역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⑥ (생 략)
-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지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관리위원</u> 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화학
물질안전위원회 물질안전위원회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현행과 같음)
2
<u>화학물질</u>
<u> 안전위원회</u>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 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u>물질동등성 인</u> 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 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 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 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u>제2항 전단에</u>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u>화학물질안전위원</u>
<u> </u>
 1. ~ 5. (현행과 같음)
1 0. (包省年 乍百)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	2
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	
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	
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u>관리위원회</u> 의 심의를 거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	
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4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	
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	
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u>관리</u>	<u>화학</u>
<u>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물질안전위원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②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u>관리위원</u>	<u>화학물질</u>
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아저위원회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 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u>제품유사성 인</u> <u>정</u>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③ <u>제2항 전단에</u>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u>화학물질안전위원</u>
<u>회</u>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 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 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 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 ---- 화학물질안전위원회----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 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 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 공 등) ① ~ ③ (생 략) 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 ----- 화학물질 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 안전위원회-----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을 명할 수 있다. (5) · (6)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같음)

(2) -----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현행과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u>관리위</u>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③ (생략)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위원
 - 2. ~ 5. (생략)

화학물
_
<u> 질안전위원회</u>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u><삭 제></u>

2. ~ 5. (현행과 같음)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 저 (생 략)

행

혂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 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생략)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 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 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 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 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 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 던 사람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

제29조(국기	가수자원관리위원회)	1
(현행과	같음)	

정

아

개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 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 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 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 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 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 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 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

 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

 무 경험이 있는 사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 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 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 제분야에서 10년 이상 연 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 람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 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 간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 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 천하는 사람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 율화법」 제106조제1항 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 2)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
	리위원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삭	제>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					
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					
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					
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					
<u>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u>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					
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					
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					

<u>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u> <u>다.</u>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가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 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 천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 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 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 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 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 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 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개 정 안

- 제26조(배출권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운영위원회(이하 "배출권운영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1.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
 - 2.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 3.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 4.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 <u>5. 제29조에 따른 상쇄</u>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②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배 출권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인증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 1. 배출권운영위원회---원이 아닌 사람
- 2. (생략)

둘 수 있다.

- ③ 분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운영위 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 다.
-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서 심의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배출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세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 (현행과 같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 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 에 <u>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u>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 획(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 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 다.

개 정 안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및 등해 방시계획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 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 회(이하 "시·도환경정책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

--

② ~ ④ (생 략)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 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 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 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 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 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

 비에 관한 사항
- 3.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 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7조(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
 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
 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
 -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 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

<삭 제>

<삭 제>

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저 등) ①・② (생 략)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④ ~ ⑧ (생 략)
-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지해제)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u>지역위원회</u>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 ③ (생 략)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환경</u>
<u>정책위원회</u>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 ① (현행과 같음) -
2
시·도환경정책위원
<u> </u>
③ (현행과 같음)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	①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	
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9조에 따른 <u>국립공원위원</u>	4 국가자연공원
회의 심의	위원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트) ①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u>국립</u>	국가
<u>공원위원회</u> 를 두고, 도에 도립	자연공원위원회
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	
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	
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	

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 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 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 ----- 국가자연공원위원회-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 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 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 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 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 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 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 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현행과 같음) 1. (생 략)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국가자연공원위원회----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 한다)

3. (현행과 같음)

3. (생략)

<신 설>

4. • 5. (생략)

- 제10조의2(전문위원) 국립공원위 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 · 연구 및 전 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공 원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 야 한다.
 - 1. 2. (생략)
 - 3.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 ③ (생략)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

3의2	. 지절	밀공원의	인증	및	취소
에	관한	사항(=	국가자	연공	?원위
<u>원</u>	회만	해당한대	<u>구)</u>		

4 • 5 (혀해과 간은)

٦.	Ο.	(110	- I E	= ロ/			
제10	조의	2(전급	문위원	1)	국가:	자연	공
<u>원</u>	위원	회의	심의	사항	에	<u>만한</u>	_
						국가	자
<u>연</u>	공원	위원	회에				
제11	조(급	공원기	본계	획의	수i	립 등	등)
1						7	-J

- 자연공원위원회-----
-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2	

- 1. 2. (현행과 같음)
- 3. 국가자연공원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제4호의 4, 제3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 ② (생략)
-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저
 - ① (생략)
 -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u>협의</u>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 1. ~ 4. (생 략)
 - ③ ~ ⑤ (생 략)
-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u>협의</u>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3조, 제9조, 제10조제3호</u>
의2·제5호, 제10조의2
,
② (현행과 같음)
세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와 국
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와 국가자
연공원위원회의 심의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렁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	
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	5
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	
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	
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	<u>「수자원의 조사·계획</u>
<u>역조성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라 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
획) ① (생 략)	획)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2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	
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u>원회</u>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 략)

<신 설>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 ③ ~ ⑧ (현행과 같음)
- ⑨ 제2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항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_
	_

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제7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 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 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시·도지 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를 둔다.
 -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 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 에 관한 사항
 -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국가수자원관
리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는 사항

-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 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된다.
-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 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원회의 위원적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 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 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 통위원회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관리위원회
-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환경 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 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 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 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삭 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③
• 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	
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	
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	
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	
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u>제10</u>	<u>환경</u>
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	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u><삭 제></u>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	
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	

-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생 략)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	②
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	
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환경정
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	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
회에 자문할 수 있다.	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③ • 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	<u><삭 제></u>
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	
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	
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u>한다.</u>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	3
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	
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u>「화</u>	<u>제7</u>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	<u> </u>
<u>학물질평가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4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	
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와 <u>「화학물질의 등록</u>	<u>제7조에 따른 화학</u>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	물질안전위원회

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시한 것을 말한다.

6. ~ 13. (생략)

-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 ^저 본계획) ① (생 략)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u>화학물질관리위원회</u>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 제7조(화학물질안전위원회)
 ①

·.
5
<u>제7조에 따른</u>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6. ~ 13. (현행과 같음)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 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2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③ ~ ⑤ (현행과 같음)
세7ㅈ(치하무지아저의의히) ①

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 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 로 <u>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u> "관리위원회<u>"라 한다)</u>를 둔다.

- ② <u>관리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u>30명</u>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 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 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 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 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 ⑤ <u>관리위원회</u>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위원회
<u>50명</u>
③ <u>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u>
④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u> </u>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
<u>다.</u>
⑤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성으로 의결한다.

-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그 밖에 <u>관리위원회</u> 및 분야 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 보의 공개)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u>관리위</u> 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 위원회를 둔다.
 - ⑤ ~ ⑦ (생 략)
-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⑥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화학물질안
	<u>전위원회</u>
	⑦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제	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
	보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
	음)
	4
	<u>화학물</u>
	<u>질안전위원회</u>
	<u>.</u>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	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 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임직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	7
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	
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u>가위원회</u> 의 심의를 거쳐 고시	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8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	
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	
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	
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u>제7</u>	<u>「화</u>
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	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을 말한다.	.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생략)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 라. (생략)

11. ~ 19. (생략)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제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u>제7조</u>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9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10. (현행과 같음)
10의 2
10~12.
「화한묵직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
물질안전위원회
가. ~ 라. (현행과 같음)
11. ~ 19. (현행과 같음)
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u>「화학</u>
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 | 학물질의 등록 · 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 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 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 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 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 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 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 5. 삭 제
-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 계·민간단체 관계자
-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⑤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 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7 (생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있다.
 -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제10조(화	학물질의	등록	등)	1
(현행과	같음)			
②				
1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 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 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u>평가</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 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 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 2. · 3.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 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⑥ ~ ⑧ (생 략)
-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

<u>화학</u> <u>화학</u> 물질안전위원회
2.·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 입할 수 있다.

- 1. (생략)
-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 질로서 <u>평가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 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 입하려는 자
- 3. (생략)
- ② ~ ④ (생 략)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 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 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u>평가위</u>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 ·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 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

1. (현행과 같음)
2
<u>화학물질안전위원회</u>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화학물
<u> 질안전위원회</u>
-

께 지정 · 고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 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 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u>평가위</u> 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 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② ~ ④ (생 략)
-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화학물질안전위원회
	1. ~ 3. (현행과 같음)
제	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u>화학물</u>
	<u> 질안전위원회</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	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하는 경우에는 <u>평가위원회</u>의 심 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 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 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2. (생 략)

-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 · 3. (생략)

		<u> 화학물실인</u>	<u> </u>
	<u>ই</u>		
	1. • 2. (현행고	같음)	
제	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삭 제></u>		
	9 • 3 (혀해고	나 간은)	